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전문공보관 형사2부장 정현주

전화 063-472-4408 / 팩스 063-472-4280

보도자료

2023. 1. 20.(금)

제 목

DNA 검사를 조작하여 유사강간 허위고소한 무고사범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특수상해 사건 피고인이 유리한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의 DNA를 자신의 향문에 집어 넣은 뒤 DNA 검사를 의뢰하면서 특수상해 피해자를 유사강간범으로 고소한 무고사범을 직접 인지한 후 1. 16. 불구속 기소함
- 경찰은 피고인의 향문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을 이유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유사강간 피해 일시와 DNA 검사일 사이 2주 간격이 있어 DNA 검출이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행적 및 DNA 조작 정황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함
- 보완수사결과 피고인이 진술한 유사강간 시점에 피고인이 제3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DNA 검출 경위에 대한 피고인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함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음
- 앞으로도 군산지청은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 처벌하되,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관련 무고사범에 대하여도 엄단할 것임

1

사건관계인

- 피고인 A(여, 30세)
- 피무고인 B(남, 30세)

※ A는 '22. 4. 26. 군산지원에 위험한 물건으로 B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

2

공소사실 요지

- '22. 3. 4. 해바라기센터에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항문 DNA 검사를 의뢰하고 '22. 4. 29. 익산경찰서에 “B가 '22. 2. 18.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던 A를 깨워 손가락을 A의 항문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

3

수사 경과

- '22. 4. 29. B에 대한 유사강간 고소장 접수(익산경찰서)
- '22. 9. 2. 경찰, 사건 송치(기소의견)
- '22. 9. 28. 군산지청, 보완수사 요구

☞ 유사강간 피해 일시와 DNA 검사일 사이 2주 간격이 있어 A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다면 B의 DNA는 대변에 쓸러나가 검출될 수 없고, A와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유사강간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착안하여 A의 행적 및 DNA 조작 정황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

- '22. 12. 21. 경찰, B에 대한 유사강간 불송치
 - ① A 휴대전화에서 유사강간 시점에 A가 제3자와 시간적 간격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하여 유사강간 고소의 허위성 입증
 - ② A는 유사강간 피해일부터 DNA 검사일까지 정상적인 식사를 못해 용변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A가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였다는 동거남 진술, A의 음식점 카드 결제 내역, 동거남에게 음식 배달주문을 요구한 녹취록 등으로 A 진술의 허위성 확인됨

- '23. 1. 9. A 추가조사 및 무고인지
- '23. 1. 12. A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 기각

※ 기각 사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등

- '23. 1. 16. A 불구속 기소

4 수사인의 및 향후 계획

- 성폭력사건 수사에서 DNA검사 결과 등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대방을 무고한 사례임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DNA를 조작하여 허위 고소한 사실을 확인함
-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22. 9. 10. 시행)으로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검사 수사개시 범위가 확대되었는바, 군산지청은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 ☐